##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0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박상혁 · 김남근 · 정일영

최기상 • 박성준 • 임호선

김현정 · 김병기 · 김선민

한민수 · 이연희 · 김남희

이인영 · 이기헌 의원

(14인)

###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 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 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1조 등).

법률 제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의"를 "불법사금융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가"를 "불법사금융업자가"로, "경우 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경우 그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에게"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을 "불법사금융중개업 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이하 "불법사금융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다른 목적등을 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불법 사금융업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로, "미등록대부 중개업자로부터"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5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13.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미등록대부업자에"를 "불법사금융업자에"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u>의</u>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u>의</u>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①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이하 " <u>미등록대부업자</u> "라 한	<u>불법사금융업자</u>
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	
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2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	
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 <u>미등록대부중개</u>	<u>불법사금융중개업자</u>
<u>업자</u> "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	
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u>미등록대부업자의</u> 이자율	제11조( <u>불법사금융업자의</u> 이자율
제한) ① <u>미등록대부업자가</u> 대	제한) ① <u>불법사금융업자가</u>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u>경우 그 이자율은</u>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 저 부중개업자는 <u>미등록대부업자</u> <u>에게</u>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 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u>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u>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 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서는 아니 된다.
  - ③ ~ ⑥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신	-  -
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형	-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
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
불법사금융업자에	
<u>게</u>	-
<u>.</u>	
②	-
	-
<u>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u>	<u>-</u>
	-
	-
	-
	-
	-
<u>.</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u> </u>
조사 등) ① 누구든지 불법시	_
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기	
업자(이하 "불법사금융업자등'	,

이라 한다)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 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하여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미등록대부업자로부</u> <u>터</u>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u>미등록대부중 개업자로부터</u>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
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세19조(벌칙) ①
1 <u>억원</u>
1. ~ 5.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u>불법사금융업자로부</u>
<u>터</u>
불법사금융중개
업자로부터

를 한 자

5. ~ 10. (생략)

③ (생 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 (생략)
- ③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u>.</u>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②
1. ~ 8. (현행과 같음)
9. <u>제12조제1항, 제5항 또는 제1</u>
2조의2제3항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